



NEWSLETTER

January 2024

Hanoi, Vietnam

서우회계법인베트남

CONTENTS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Viet Nam-South Korea agreement on social insurance)..... 2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Viet Nam-South Korea agreement on social insurance)

1. 내용

2023년 12월 8일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보험협정은 양국가간 사회보장관련 연금보험분야의 주요규정을 양체약국간 통합해 규율하는 조약입니다. 양국의 적용법령 및 대상자는 한국의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가입한 국민연금가입자와 베트남의 social insurance 법에 의거해 가입한 SI 보험가입자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자료를 통해 해당 사회보험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납부면제:

한국에서 사업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 5+3년을 베트남에서 SI를 납부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한국에서 지역가입자를 유지하는 경우, 베트남내 SI 납부면제기간은 5년입니다.

- 가입기간합산:

한쪽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은 10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협정상대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결정할 수 있음. 각국의 최소가입기간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 협정전과 동일하게 합산없이 연금수급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양국에 연금가입경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기간을 합쳐서 고려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베트남 연금보험료(SI) 면제받기 위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국민연금가입증명서(한국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을 통해 발행), 베트남 Vietnam Social Security 공단에 면제신청서 제출이 필요할 것이나 아직 양식 미확정됨.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는 동 사회보험협정 및 관련서식 및 실행절차를 공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베트남 관할관청에 후속공표절차를 대기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SI 면제개시시점이 2024년 1월 1일 개시확정일로 예상하나 베트남관청이 이를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관할 DOLISA 에 SI 면제의사를 통지하고 추가실행절차에 대한 안내 및 관련규정의 공표를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2. 사회보험협정의 적용시 주의사항

사회보험협정의 적용을 베트남내 근무하는 근로자가 적용할 경우, 양국 과세당국은 근로자의 과세자료 접근성의 개선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국인이 SI 를 베트남내 납부하지 않기 위해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한국내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사업장이 존재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근로자향 근로세 세무조사시 베트남내 국세청이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베트남내 회사에게 한국내 근로소득 수령액을 베트남내 근로세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과세방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하는 영문 요약설명입니다.

On December 8, 2023, Viet Nam and South Korea have signed an administrative deal on the implementation of a bilateral agreement on social insurance and this agreement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1, 2024. It aims to avoid double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paid by Vietnamese and South Korean citizens working in each other's country. Specifically, from January 1, 2024, employees only contribute social insurance into the pension fund in one country, the time and amount of contribution will be recorded and accumulated according to each country's social insurance regulations to calculate benefits upon retirement.

In addition, Vietnamese workers will be able to continue to pay insurance contributions when going to work in South Korea and likewise for South Korean workers coming to Vietnam.

Accordingly, we understand that enterprise can notify to stop the social insurance payment obligations of South Korean workers in Vietnam if they are participating in social insurance in Korea. However, up to now, there are no specific instructions, the company should discuss further with provincial insurance agencies for further guidance.

*The above information is for reference only, not specific consulting advice.
For more detailed guidan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Office.*

SEOUI ACCOUN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Hanoi Head office: 10th floor,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Trung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Tel: (+84) 24 3776 7049/50

Saigon branch: 3F CF Building 2Bis-4-6 Le Thanh Ton,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